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279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김용만 · 윤종균 · 이용우
김남근 · 임호선 · 양부남
박 정 · 유동수 · 허성무
박민규 · 이주희 · 김승원
문진석 · 최혁진 · 이수진
김 윤 · 허 영 · 이정문
정진욱 · 박찬대 · 이광희
이재관 · 김현정 · 박지원
이강일 · 이기현 · 박상혁
이훈기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족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국절: 4월 11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u>2.</u> ~ <u>5.</u> (생 략)</p> | <p>제2조(국경일의 종류) ----- -----.</p> <p>1. (현행과 같음)</p> <p><u>2.</u> <u>민국절: 4월 11일</u></p> <p><u>3.</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p> |